브리지스톤 그룹

GLOBAL SUSTAINABLE PROCUREMENT POLICY

버전 3.0

2024 년 1 월

BRIDGESTONE

목차

머리말 03

브리지스톤의 기업 이념 04

브리지스톤의 조달 사명 06

브리지스톤의 100% 지속가능 재료와 탄소 중립을 향한 약속 08

브리지스톤의 천연 고무 지속가능성에 대한 약속 10

브리지스톤의 글로벌 지속가능 조달 방침 13

- 투명성 15
- 규정준수 17
- QCD(품질, 비용, 납기) 및 혁신 18
- 지속가능한 조달 관행 19

부록 I – 용어 정의 32

부록 II – 참고 문헌 38

BRIDGESTONE

머리말

세계적으로 많은 산업에 지속가능한 조달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널리 수용되고 있다. 이 개념은 환경적으로 책임지는 조달에 기반을 두며, 나아가 주요 사업 파트너 및 공급자의 인권 및 책임지는 노동 관행과 건전한 거버넌스를 존중하는 운영에 기대를 건다.

전세계 타이어 및 고무 관련 산업을 선도하는 브리지스톤은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집중해왔다. 2050 년을 향해 전진하면서 지속 가능한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브리지스톤은 사회, 고객, 파트너 및 공급업체와 함께 호흡하는데 있어서 브리지스톤 E8 커미트먼트(Bridgestone E8 Commitment)의 여덟 가지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중요한 것은 조달 방식에 있어서 삼림파괴와 탄소중립 같이 대중적인 환경 이슈를 비롯해 노동권, 토지이용, 용수 사용 및 수질, 기타 많은 중요 사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지속가능한 조달 방식의 시각을 브리지스톤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상의 고려사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는 브리지스톤이 공급자에게 거는 품질, 비용 및 납기(QCD)에 대한 기대수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시킬 수 있도록 브리지스톤은 지속가능한 조달 정책의 실천에 집중할 것이다.

브리지스톤의 지속가능한 조달 활동을 증진 및 가속화하기 위해 본사는 공급자와 협력하여 규정준수, 안전 및 QCD 를 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환경 관리 관행, 인권 존중, 공정 노동 관행의 지원 및 투명성 증가를 통해 전체 공급망의 가치를 창출한다. 이와 동시에 브리지스톤은 브리지스톤의 공급망이 존재하는 지역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브리지스톤은 공급자가 지속가능한 조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본사와의 협력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적절한 관행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브리지스톤은 이번에 세 번째 버전의 글로벌 지속가능 조달 방침을 발표하면서, 브리지스톤은 지속 가능한 조달 활동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강화한다.

첫 번째 버전에서 표명했듯이, 브리지스톤은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우리 회사 방침의 사회적 기대 부응을 도모할 것이다.

브리지스톤의 기업 이념

BRIDGESTONE

브리지스톤의 기업 이념

사명

"최고 품질로 사회에 공헌"

브리지스톤은 제품과 서비스, 기술 및 모든 기업 활동에서 고객과 사회에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기를 열망한다. 품질에 대한 이러한 약속은 이익의 필요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며 세계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명을 통해, 브리지스톤은 세계가 신뢰하고 모든 사람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토대

"Seijitsu-Kyocho" [성실 및 협조]

Seijitsu-Kyocho 란 업무를 수행하고 상대방을 대하며 사회에 참여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다양한 기술, 가치, 경험, 성별, 인종을 존중하고 협조를 발전시킴으로써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Shinshu-Dokuso" [창의적 개척]

Shinshu-Dokuso 란 미래를 상상하고 전향적인 상호경쟁을 통해 혁신을 추구하여 사회를 더 유익하게 하고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고 독특한 방법으로 유익한 신제품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Genbutsu-Genba" [현장 확인에 근거한 결정]

Genbutsu-Genba 란 시간을 내어 현장으로 가서 사실을 직접 확인한 다음 관찰한 바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확인한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더 나은 제품 및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다.

"Jukuryo-Danko" [철저한 검토 후 단행]

Jukuryo-Danko 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과 다양한 가능성을 조사하고 결정된 행동 방침의 수행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다. 필요한 것을 확인하고 비전을 결정하는 것이다. 일단 결정이 내려지고 행동 방침이 정해지면 절박감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이다.

브리지스톤의 조달 사명

BRIDGESTONE

브리지스톤의 조달 사명

브리지스톤의 조달 사명은 *"지속가능한 조달 관행을 통해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브리지스톤은 다음 사항을 브리지스톤의 전체 공급망에 뿌리내리게 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해 노력하고 장기적인 환경, 사회 및 경제 이익을 실현하면서 가치를 창출할 것을 약속한다.

1. 투명성
2. 규정준수
3. QCD 및 혁신
4. 지속가능 조달 관행

브리지스톤의 100% 지속가능 재료와 탄소 중립을 향한 약속

BRIDGESTONE

브리지스톤의 100% 지속가능 재료와 탄소 중립을 향한 약속

브리지스톤은 조달하는 제품 및 서비스가 브리지스톤의 글로벌 지속가능 조달 방침(“방침”)에 따라 행동을 하는 공급자들에게서 나오게 할 것을 약속한다.

브리지스톤의 2050 년 이후 목표인 “100% 지속가능 재료”를 향한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며, 브리지스톤이 단독으로 성취할 수도 없다. 브리지스톤은 산업 협회 회원들의 성원 속에서 지속가능한 사업을 향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를 이용하고 기타 유용한 국제 공인 표준에 따르고 있다.

브리지스톤은 2050 년 이후 탄소 중립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인 환경 목표를 계속해서 천명하는 동시에 직접적인 사업 운영(범위 1 및 2)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을 2030 년까지 (2011 년 기준) 50% 낮추는 것을 중간 목표로 삼는다. 브리지스톤은 2020 이정표에 따라 자원 생산성을 향상함으로써 혁신을 가속화하고 재활용 및 재생가능 소재 이용률을 2030 까지 40% 높일 것이며, 브리지스톤과 거래하는 공급자를 포함한 전체 가치사슬도 탄소 중립 노력(범위 3)에 동참하여야 한다. 이러한 항목과 주제는 본사의 2030 이정표 약속 공개 자료에서 자세히 다룬다.

브리지스톤의 천연 고무 지속가능성에 대한 약속

BRIDGESTONE

브리지스톤의 천연 고무 지속가능성에 대한 약속

브리지스톤은 다양한 고무 및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세계적으로 타이어 브랜드로 유명하다. 타이어의 성능에 대한 기대는 매우 크며 운전자의 안전 확보에도 매우 중요하다. 타이어의 성능 요건의 충족에는 천연 고무와 합성 고무의 조합, 기타 성분, 원료, 섬유, 코드 및 직물이 필요하다.

산업 전문가들은 세계 인구 증가와 자동차화에 따라 타이어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천연 고무 소비도 세계적으로 증가되어 지속가능한 천연 고무 공급망이 긴요한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브리지스톤은 지속가능한 천연 고무 사업이 번창하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천연 고무 사업은 거대한 동시에 소규모 농가 및 농부, 중간 및 대규모 토지, 원료 중개인, 가공처리 공장, 고무 제품 제조 등으로 분화되어 있다. 천연 고무는 동남아시아에서 대량 생산되며, 판매 및 가공처리는 비교적 소수의 최상위 공급자들이 맡고 있다. 동남아시아가 대규모 생산지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천연 고무의 대부분이 세계적으로 고무 생산 지역의 작고 영세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나온다는 점이다.

지속가능한 천연 고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와의 협력을 비롯한 끝없는 노력과 폭넓은 대중적 인식이 요구된다. 이에 요구되는 비용 및 과제는 어느 타이어 및 고무 제조회사 하나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다. 브리지스톤은 가치사슬 구성원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이 문제의 연구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8 년 10 월에는 지속가능한 천연고무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GPSNR)이 공식적으로 창설되었다. GPSNR 은 천연 고무 산업의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타이어 산업 프로젝트(TIP)에서 세계 지속가능 발전 기업위원회(WBCSD)의 일부분으로 만든 국제적인 이해관계자 플랫폼이다. GPSNR 총회의 구성원에는 브리지스톤을 비롯한 타이어 제조자와 다른 천연 고무 제품 제조자, 자동차 제조업자와 기타 하류부문 사용자, 생산자/가공자/거래업자, 시민 사회 구성원이 포함된다. 브리지스톤은 GPSNR 창립 멤버로서 GPSNR 의 사명과 정책 체계에 대한 본질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회원 요구사항, 계획 이행 등 모든 플랫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브리지스톤은 GPSNR 의 정책 체계를 공급자 최소 요건에 포함시킴으로써 GPSNR 요건에 따라 생산 및 가공된 천연 고무에 대한 선호를 표현하고 있다. 브리지스톤은 미래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업계 이해관계자를 위한 계획에 참여하면서 지리적, 관할권, 또는 다른 공간적 수준에서 GPSNR 의 원칙을 지지하고 준수할 것이다. 현재, 브리지스톤은 GPSNR 집행위원회를 포함하여 업계 변화를 이끄는 다양한 실무집단에 참여하고 있다. 브리지스톤은 GPSNR 을 지지하는 기업으로서 구체적이고 기한이 정해진 지리적 약속을 천연 고무 가치사슬의 핵심 요소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GPSNR 이행 가이드에 맞추어

더욱 강화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매년 "브리지스톤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이다.

브리지스톤은 천연 고무가 환경, 사회 및 브리지스톤 사업을 위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될 수 있는 신재생 천연 자원임을 확인한다. 브리지스톤이 운영하는 곳을 포함하여 세계 천연 고무 영업 및 공급망은 기술 및 혁신적 아이디어의 발전에서 계속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브리지스톤의 천연 고무 공급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촉진하기 위해, 공급망 전체에 걸쳐 천연 고무 재료의 원산지점에 대한 가시성이 더욱 커지도록 추적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추적성이 개선되면 브리지스톤은 천연 고무 생산 과정에 관련된 장소, 방법 및 주체에 대해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환경적, 사회적 및 거버넌스 여건을 향상시킬 기회를 제공한다.

브리지스톤의 천연 고무 공급망 개선에 대한 약속은 세계 인구 증가로 인해 이동성 선택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브리지스톤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에 근거한다. 수요의 증가는 세계적으로 복합적인 사회 문제, 삼림, 하천의 수계, 생물다양성 및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과제를 제기할 수 있다. 결국, 브리지스톤 사업은 자연환경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과 번영에 의존한다.

브리지스톤은 농부, 공급자, 중개인, 사업 파트너, 동종업체, 산업 그룹, NGO, 및 전문가들에게 브리지스톤이나 고무 산업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구의 천연 자원으로부터 혜택을 향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브리지스톤의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브리지스톤 팀과 협력할 것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촉구한다.

브리지스톤의 글로벌 지속가능 조달 방침

BRIDGESTONE

브리지스톤의 글로벌 지속가능 조달 방침

본 방침은 지속가능한 조달 관행을 촉진하고 브리지스톤이 자격을 갖춘 제품 및 서비스 공급자를 확인 및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될 것이다. 본 방침은 브리지스톤의 내부 제조시설 및 운영 장소를 포함하여 브리지스톤의 다양한 공급망의 모든 장소에 적용된다. 본 방침을 준수하기 위해 공급자는 이러한 요건 및 우선 관행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기본 사항을 채택해야 한다.

1. 투명성
2. 규정준수
3. QCD(품질, 비용, 납기) 및 혁신
4. 지속가능한 조달 관행

공급자는 브리지스톤과 사업을 하기 위해 적어도 본 방침에 정의된 최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공급자는 우선 관행을 준수할 것이 **권고된다**. 브리지스톤의 이러한 열망은 특히 천연 고무 공급망을 비롯하여 다양한 공급망을 개선시킬 것이다. 브리지스톤은 공급자가 우선 관행을 달성하도록 돕기 위해 공급자와 협력하고자 한다.

공급자가 본 방침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브리지스톤은 공급자가 최소 요건 수준을 준수하도록 공급자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공급자가 본 방침을 준수하려 하지 않을 경우, 브리지스톤은 적어도 관계의 종료를 포함하여 해당 공급자와의 관계를 재고할 것이다. 해당 공급자와의 관계 평가 시, 브리지스톤은 환경적, 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을 포함하여 변화가 해당 공급자에게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잠재적 영향을 평가할 것이다.

공급자는 본 방침을 **준수해야 하며**, 가능하면 원산지점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을 확대하기 위해, 그들의 공급자와 본 방침을 확대/공유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브리지스톤에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문제 또는 비상상황 발생 시 최대한 신속히 브리지스톤에 **알려야 한다**.

공급자는 그들이 영업을 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모든 관련 국가, 지역 및 지방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공급자는 부록 II 의 규범과 같은 국제 규범을 존중할 것이 **권고된다**.

본 방침은 또한 공급자, 브리지스톤 조달 요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위한 소통 및 개선 도구의 역할을 한다. 브리지스톤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 시 본 방침을 검토 및 갱신할 것이다. 브리지스톤 직원 및 사업 파트너의 전문 지식에 의거하여, 본 방침은 세계의 환경 및 사회적 여건뿐 아니라 산업 내 변동 상황 및 발전을 반영하기 위해 검토 및 갱신될 수 있다. 업데이트된 버전의 방침은 브리지스톤 내에 내부적으로

공유된 후에 공급자와 공유된다. 단, 공급자는 관련 변경 사항에 주목하고 그들의 공급자와 해당 정보를 공유하도록 기대된다. 브리지스톤은 회사 웹사이트 및 기타 외부 통신 수단을 통해 본 방침 및 변경 사항을 공개할 것이다.

브리지스톤은 공급자에게 본 방침에 따라 자체 방침 및 지침을 개발하고 알려서 그들의 사업 파트너와의 협력하에 그들의 지속가능성 지식 및 계획을 심화 및 확대할 것을 요청한다.

브리지스톤은 모든 사업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본 방침에 대한 건설적 피드백을 환영한다.

1. 투명성

브리지스톤은 투명성이 2 가지 주요 목표인 추적성과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직접 지원함에 따라 투명성을 전체 사업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브리지스톤은 운영에서 그리고 공급망 전체에 걸쳐 추적성을 강화하는 것이 조달하는 고품질 제품 및 서비스의 유지 및 개선의 토대가 된다고 생각한다. 추적성은 또한 환경적, 사회적 및 거버넌스 문제와 관련된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브리지스톤은 기업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브리지스톤은 계약 조건 및 적정 수준의 기밀유지를 존중하는 한편, 모든 공급망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 및 공급자와의 거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및 경영 방침을 개발, 소통 및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브리지스톤은 다른 상업적 핵심 고려사항과 함께 글로벌 지속가능 조달 방침의 요구사항을 의사결정과정에 통합하였다.

1.1 추적성

브리지스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적정한 계획을 가지고 지속가능성 목표를 향한 진전도의 효과적인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 또는 채택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예를 들어, 브리지스톤은 천연 고무 공급망의 가시성을 높여줄 적절한 도구를 평가하기 위해서 GPSNR 회원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브리지스톤은 공급망 위험 평가 및 위험 경감 활동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맵핑 역량의 개발을 포함하여 이에 국한하지 않고, 이러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급자, 기술 전문가 및 다른 가치사슬 구성원들과의 협력을 환영한다.

브리지스톤은 조달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추적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기술 및 방법을 적극 모색하고 시험한다. 브리지스톤은 원산지점 공급에 대한 추적 능력을 더 잘 갖추고 이에 따라 웹사이트와 보고서 및 기타 통신 수단을 통해 진행 상황을 공개적으로 공유할 것이다.

공급자에 대한 기대: 추적성 향상

최소 요건

- 공급자는, 예를 들어, 원천을 식별하고 추적하기 위한 경영 시스템을 실행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원천에 대해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천연 고무 산업 내부에서는, GPSNR 이행 가이드에 정의되어 있는 대로 적절한 관할권 수준에서 추적성이 요구된다.
- 공급자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원천에 관해 브리지스톤의 정보 요청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관행

- 공급자는 추적성 향상에 대해 브리지스톤과 적극 협력한다.
- 공급자는 새로운 기술 시험 또는 원산지점에서의 통신 프로그램 참여와 같이 추적성을 향상시키는 계획의 선택을 모색하고 이에 참여한다.
- 공급자는 그들의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그리고 원산지점에 대한 제품 및 서비스의 원천 공급지에 대한 완전한 이해의 증거를 제시한다.
- 공급자는 SDG 12 –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과 같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의 기여를 증명한다.

1.2 거버넌스

브리지스톤에 있어서, 효과적인 거버넌스란 이해관계자에게 명확한 의사결정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투명한 방침, 절차 및 과정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잘 설계되고 효과적인 거버넌스(예: 브리지스톤의 글로벌 뇌물 수수 방지 정책, 브리지스톤의 제 3 자 실사 도구와 절차, 부패 위험 예방을 담당하는 브리지스톤 팀원을 위한 훈련과 교육)는 또한 브리지스톤이 어떠한 형태의 부패, 뇌물 수수, 강탈 또는 횡령에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브리지스톤은 사업 운영 및 효과적인 거버넌스에서의 투명성이 환경 및 사회적 영향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이해와 처리 능력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한다. 브리지스톤은 이해관계자 관여 및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PIC) 원칙을 수용한다. 지역 사회, 원주민, NGO, 산업 협회, 기타 조직과, 사업 실시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정부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의 지방 이해관계자 이외에, 브리지스톤은 국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정기적으로 소통한다. 브리지스톤은 이해관계자 요구 및 기대를 고려하여 필요 시 본 방침을 검토, 갱신 및 전달할 것이다.

브리지스톤을 비롯한 업계 이해관계자들은 천연 고무 공급망의 개선을 위해 지속가능한 천연고무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GPSNR)을 출범하였다. 브리지스톤은 GPSNR 의 원칙과 정책 체계, 계획을 지지하며 GPSNR 의 향후 활동에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이고 기한이 정해진 지리적 약속을 천연 고무 가치사슬의 핵심 요소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GPSNR 이행 가이드에 맞추어 더욱 강화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매년 "브리지스톤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이다.

또한, 브리지스톤은 민원을 접수하고 생산 및/또는 구매(소싱)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할 수 있도록, UNGP 효과성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브리지스톤은 공급자의 브리지스톤 방침 준수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본사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방침 준수 및/또는 과거나 진행 중인 피해의 복원을 위한 시간 제한적 이행 계획을 공급자와 함께 수립한다. 브리지스톤은 공급자가 브리지스톤의 지속가능 조달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환경, 노동 관행, 공정 사업 관행, 지속가능 조달이라는 핵심 주제 전반에서 제 3 업체의 평가 플랫폼을 활용한다. 브리지스톤은 모든 직접 재료 공급자와 특정한 간접 재료 공급자가 이러한 제 3 자 평가를 완료할 것으로 기대한다.

브리지스톤은 공급자에게 위에 설명된 가치에 책임감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

공급자에 대한 기대: 효과적인 거버넌스 관행 증명

최소 요건

- 공급자는 브리지스톤, 소비자 및 고객으로부터 정보 요청에 제품 및 운영에 관한 적절한 정보로 **대응해야 한다**.
- 공급자의 어떠한 형태의 부패, 뇌물 수수, 강탈 또는 횡령에도 참여하거나 용인하는 것이 **금지된다**.
- 공급자는 사업 운영의 규모 및 범위에 비례하여 건전하고 안정된 재무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
- 공급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개인 데이터 및 개인 정보뿐 아니라 사업 파트너의 기밀 정보 및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공급자는 제 3 자 평가 또는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매년 브리지스톤에 보고함으로써 본 방침의 준수를 증명한다.

우선 관행

- 공급자는 사업 파트너와 공유될 수 있는 방침, 공급자 선택 기준, 기록 관리, 보고, 소비자 및 고객 요청에 대한 대응 절차를 포함하여 명확한 관리 관행을 이행한다.
- 공급자는 기록을 요하는 익명의 제보를 처리할 고충처리 방법을 강구하고, 이 방법을 통해 확인된 문제의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수립한다.

2. 규정준수

브리지스톤은 브리지스톤이 영업을 하는 국가/지역의 모든 해당 법규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공급자들과 함께 관련 국제 표준을 촉진하고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브리지스톤은 공급자가 브리지스톤의 지속가능 조달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환경, 노동 관행, 공정 사업 관행, 지속가능 조달이라는 핵심 주제 전반에서 제 3 자 평가를 활용한다. 브리지스톤은 모든 직접 재료 공급자와 특정한 간접 재료 공급자가 요청받은 평가를 완료할 것으로

기대한다. 브리지스톤은 구매(소싱) 결정 과정에서 해당하는 경우 다른 핵심 상업 역량 중에서 본 지속가능성 평가를 활용한다.

공급자에 대한 기대: 규정준수 증명

최소 요건

- 공급자는 독점, 부당한 거래 제한(카르텔, 담합 입찰 등), 불공정 사업 관행 또는 우세한 지위의 남용과 같은 관행에 관한 경쟁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공급자는 공급자 국가 및 영업 지역의 모든 해당 표시 법규와 브리지스톤의 표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공급자는 상류부문 공급망이 공급자 국가 및 영업 지역의 모든 해당 법규를 준수하여 운영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 공급자는 사업 운영의 규모 및 범위에 비례하여 방침, 전략, 행동 수칙, 보고 체계, 교육 프로그램 및 기타 규정준수 보장 수단을 수립 및 **편성해야 한다**. 공급자는 상류부문 공급망이 공급자는 상류부문 공급망이 사업과 관련된 국제 표준 및 모범 규준을 숙지 및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한다.
- 공급자는 모든 관련 제한, 경제 제재 제한 및 수출 통제에 관한 모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해당 통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제품, 기술 또는 기타 수출품이 제한이나 규제를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확인에 대한 문서 작성 및 제공이 필요하다.

우선 관행

- 공급자는 사업과 관련된 국제 표준 및 모범 규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 공급자는 자체 공급망 및 상류부문 공급망이 사업과 관련된 국제 표준 및 모범 규준을 준수하여 운영되도록 확인한다.

3. QCD(품질, 비용, 납기) 및 혁신

브리지스톤은 고품질 재료 및 서비스의 적시, 적정 비용 납품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공급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브리지스톤은 부피 감소, 내구성 증가, 재활용 및 재사용과 같은 제품 개선과 타이어 재생 서비스 제공에 관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또한, 브리지스톤은 세계 지역사회 지원을 확고히 하기 위해 혁신 기술을 모색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브리지스톤은 또한 천연 고무 대외 구매 및 자체 천연 고무 농장을 포함하여 운영 및 제조 과정에 첨단 기술을 반영할 방법을 계속 모색할 것이다.

공급자에 대한 기대: QCD 원칙 증명

최소 요건

- 공급자는 해당 법규에 따른 품질 기준과 브리지스톤의 품질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공급자는 위조 부품 및 자재가 전달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개발, 실행 및 유지해야 한다.

- 공급자는 해당 법규 및 브리지스톤의 기준에 따른 문서화 및 보고 요건을 비롯하여 품질 및 안전 표준에 부합함을 보장하기 위해 품질 보증 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 공급자는 브리지스톤의 사양 및 품질 요건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생산과 납품의 효율 향상 및/또는 비용 감소를 위한 새로운 기술이나 관행을 모색한다. 공급자는 상류부문 공급망이 산출량 및 제품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관행 개선을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공급자에 대한 기대: 혁신 증명

최소 요건

- 공급자는 브리지스톤이 요청하는 대로 모범 규준 또는 기타 표준에 따라 생산성/효율을 최적화한다.

우선 관행

- 공급자는 기존 및 신흥 기술을 탐색하고 새로운 공정 또는 관행의 혁신에서 자기 역할을 담당한다.

4. 지속가능 조달 관행

브리지스톤은 인권 존중, 토지 이용, 보건, 안전, 재난 예방 및 탄력성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조달을 고려한다.

제품의 조달, 특히나 천연 고무, 분쟁광물, 코발트와 같은 원자재는 환경 문제 및 인권 영향 측면에서 잠재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제품 조달의 잠재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브리지스톤은 본 방침에 기술된 관행에 따라 제품과 원료를 구입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관행은 내부 제조시설 및 운영을 포함하여 모든 공급자에게 적용된다.

부록 II에 수록된 국제 규범은 브리지스톤이 환경적으로 및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조달과 관련하여 공급망을 통해 따르고자 하는 모범 규준 및 표준을 나타낸다. 브리지스톤은 조달 또는 기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인권 남용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이들 규범을 실행하는 것은 이들 규범을 방침 또는 지침에 문서화하는 것만큼 쉽지 않다. 브리지스톤은 지속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처인 각 지역의 고유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제품 또는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조달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그와 같은 문제의 처리는 해당 이해관계자의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행 계획 또는 기타 해결책은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PIC)의 원칙에 따른다.

4.1 환경적으로 책임지는 조달

브리지스톤은 환경 관리 시스템의 개발 및 이행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공급자에게 환경 문제에 관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급자와 협력할 것이다.

공급자에 대한 기대: 환경적으로 책임지는 조달 관행 증명

최소 요건

- 공급자는 공급자 국가 및 영업 지역의 모든 해당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공급자는, 사업 운영의 규모 및 범위에 비례하여, 규정준수를 유지하고 환경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관행

- 공급자는 잠재적 환경 영향을 확인하고 제품 또는 서비스의 추적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공급자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지속적으로 확인, 감시 및 감소한다.
- 공급자는 환경 문제 및 지속가능한 관행에 대해 직원의 지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또는 계획을 개발한다.
- 공급자는 환경적 관행에 관한 국제 표준 및 모범 규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 공급자는 상류부문 공급망이 환경적 관행에 관한 국제 표준 및 모범 규준을 숙지 및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한다.
- 공급자는 자체 공급망 및 상류부문 공급망이 환경적 관행에 관한 국제 표준 및 모범 규준을 준수하여 운영되도록 보장하고 확인한다.
- 공급자는 자신의 운영이 ISO14001 와 같은 모범 환경관리관행의 국제 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인증 받도록 **권고된다**.

조달 운영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주요 영향과 이를 줄이는 방법을 고려하여 브리지스톤은 다음 7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둔다.

1. **삼림벌채 금지**
2. **이탄지대 개발 금지**
3. **생물다양성 고려사항**
4. **물 관리**
5. **자원 보전 및 폐기물 감소**
6.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7. **화학물질의 관리**

4.1.1 삼림벌채 금지

– 구매(소싱) 및 생산 활동에서 브리지스톤은 지속가능한 천연고무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GPSNR)의 정의에 따른 삼림벌채를 금지하며, 기후 변화 대응과 야생 보호에 매우 중요한 보존 가치가 높고(HCV) 탄소 보존량이 많은(HCS) 지역을 포함하여 삼림과 기타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을 요구한다. 브리지스톤은 참여 매핑을 이용하여 민감한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 공급자, 사업 파트너,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것이다.

브리지스톤은 상기 목표와 더불어 자사 농장의 천연 고무를 고려할 때, 삼림 파괴 지역을 자연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조림을 적극 실시한다. 브리지스톤은 다양한 기법 및 도구를 이용하여 자체 고무 농장의 평가와 매핑을 계속할 것이다.

브리지스톤은 기존의 삼림벌채 금지 계획에 전념해 온 바, 가장 최근에는 2018 년 버전의 지속가능 조달 방침을 통해 GPSNR 의 정책 체계에서 2019 년 4 월 1 일이 기한으로 채택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날짜를 추가적인 공급망 논의 및 개선을 위한 업계 기준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삼림벌채 금지 방침을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된 지역에서 나오는 천연 고무는 비준수 재료로 고려될 것이다.

최소 요건

- 공급자는 삼림 보호에 관한 모든 국가, 지역 및 지방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공급자는 삼림 벌채 가능성 또는 관련 위험을 확인하고 그들이 공급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원산지점을 숙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공급자는 자연림을 농작물 재배 또는 기타 비삼림 용도로 전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 공급자는 HCV 자원 네트워크와 HCS 접근법에서 정의하는 HCV 및 HCS 지역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는 본 방침의 4.1.3 생물다양성 고려사항에 기술된 요구사항이 포함된다.
- 공급자는 개발 기회의 평가, 삼림 지역의 매핑 또는 이 주제와 관련된 관리 계획의 수립 시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PIC) 원칙에 **따라야 한다**.
- 공급자는 토지 조성, 토지 관리, 또는 정당성이 입증되어 문서화된 사례(예: 방화시설, 공용 폐기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위생 목적의 폐기물 관리, 기타 응급사태) 이외의 목적을 위한 신규 또는 기존의 운영에서 노천소각/불 이용이 **금지된다**.
- 공급자는 파괴되거나 피해를 입은 지역을 위한 완화/복원 계획을 포함하여, 자연림 및 다른 생태계와 그들의 보존 가치를 장기적으로 보호하려는 노력을 지원한다. 천연 고무 공급망은 GPSNR 이행 가이드에 따라 본 요건을 준수한다.

우선 관행

- 공급자는 SDG 15 – "육상 생태계"와 같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의 기여를 증명한다.

4.1.2 이탄지대 개발 금지 – 이탄지대는, 물이 고갈되고 그을렸을 때,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배출하여 기후 변화를 야기시키고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인간 건강을 해친다.

최소 요건

- 공급자는 이탄지대의 보호에 관한 모든 국가, 지역 및 지방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공급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깊이와 상관없이, 이탄지대에서의 배수, 개간, 소각 또는 개발이 **금지된다**. 천연 고무 공급망은 GPSNR 이행 가이드에 따라 본 요건을 준수한다.
- 공급자는 이탄지대의 개간, 배수 또는 소각의 관련 위험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들이 공급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원산지점을 숙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1.3 생물다양성 고려사항 – 브리지스톤이 영업을 하는 각 지역은 독특한 생물다양성 및 생태학적 특성을 가진다. 이를 고려하여, 브리지스톤은 각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특히 천연 고무 영업 및 공급과 관련된 조달 활동의 잠재적 영향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최소 요건

- 공급자는 보존, 회복 및 기반시설 개발에 관한 모든 국가, 지역 및 지방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공급자는 잠재적 생물다양성의 위험 또는 기회를 확인하고 그들이 공급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원산지점을 숙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공급자는 생물다양성의 평가를 포함하여 HCV 및 HCS 지역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한다**.

- 공급자는 관리 대상 지역에서 희귀종, 절멸위기종, 멸종위기종, 심각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 동물의 밀렵, 과도한 사냥, 서식지 손실을 방지하고 영향권에서 이루어지는 야생 보호 활동을 지원하도록 **요구된다**.

우선 관행

- 공급자는 그들 지역에 고유한 생물다양성의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NGO 또는 기타 조직과 같은 전문가와 협력한다.
- 공급자는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제품 개발, 조달, 생산, 고객 이용, 수명 종료 단계)에 걸쳐 생물다양성 고려사항을 포함하는 환경 관리 계획을 개발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발표한다.
- 공급자는 파괴되거나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원 계획을 수립한다.
- 공급자는 SDG 9 – "산업, 혁신 및 기반시설"과 SDG 15 – "육상 생태계"와 같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의 기여를 증명한다.

4.1.4 물 및 토양 관리 – 수질 및 물의 이용, 토양 관리에 관한 법규는 국가 및 지역별로 다르다.

브리지스톤은 영업을 하는 각 지역의 물 가용성, 수질 및 물 사용과 토양 관리와 관련한 고유의 문제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잠재적 영향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전세계적으로, 브리지스톤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가용성 또는 수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모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한다.

최소 요건

- 공급자는 물 사용 및 폐수 배출에 관한 모든 국가, 지역 및 지방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공급자는 물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 또는 기회를 확인하고 그들이 공급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원산지점을 숙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공급자는 물 사용을 관리하고 불법적인 폐수 배출을 **방지해야 한다**.
- 공급자는 물의 양과 질을 보호하고 가능한 모든 운영에서 물 이용을 최적화 및/또는 줄이도록 **요구된다**. 천연 고무 공급망은 GPSNR 이행 가이드에 따라 본 요건을 준수한다.
- 공급자는 토양의 양과 질을 보호하고 침식, 양분 저하, 침하, 오염을 예방**해야 한다**. 천연 고무 공급망은 GPSNR 이행 가이드에 따라 본 요건을 준수한다.

우선 관행

- 공급자는 폐수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고 빗물 수집 방법을 이용하고 취수를 줄이며 절수 기술 개발을 모색한다.
- 공급자는 운영을 분석하고 특히 물부족 지역에서의 환경적, 사회적 또는 사업상 영향과 관련된 위험을 확인한다.
- 공급자의 운영은 ISO14001 과 같은 모범 환경관리관행의 국제 공인 기준을 충족함을 인증 받는다.
- 공급자는 SDG 6 – "깨끗한 물과 위생"과 같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의 기여를 증명한다.

4.1.5 자원 보전 및 폐기물 감소 – 폐기물 및 재활용에 관한 법규는 국가 및 지역별로 다르다.

브리지스톤은 위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 운영 내에의 재사용, 재활용 및 회수 등 모범 폐기물 관리 관행을 옹호한다. 2050 년과 그 이후의 목표인 "100% 지속 가능한 자재"를 달성하기 위해 브리지스톤은 혁신을 가속화하고, 재활용 및 재생 가능한 자재의 사용 비율을 2030 년까지 40%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최소 요건

- 공급자는 폐기물 및 재활용에 관한 모든 국가, 지역 및 지방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공급자는 불법적인 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을 감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공급자는 감소, 재사용 및 재활용 활동 또는 계획을 통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생산 및 납품에 있어서 자원 효율을 개선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해야 한다.

우선 관행

- 공급자는 물류의 경우를 포함하여 포장 및 사용된 포장재의 양을 감소한다.
- 공급자는 감소, 재사용, 재활용 및 회수에 관한 새로운 방법을 브리지스톤과 공유하고, 브리지스톤 제품 사양 및 품질 기준을 충족시킨다.
- 공급자의 운영은 ISO14001 과 같은 모범 환경관리관행의 국제 공인 기준을 충족함을 인증 받는다.
- 공급자는 SDG 12 –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과 같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의 기여를 증명한다.

4.1.6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 에너지 소비 및 배출에 관한 법규는 국가 및 지역별로 다르다. 그러나 많은 나라와 자동차업체들이 탄소 중립 목표를 마련해두고 있다. 브리지스톤은 2023년 1월에 과학적 기준 목표 (SBT) 이니셔티브로부터 2030년까지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에 대한 SBT 인증을 획득했으며, 브리지스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1년 기준) 50% 감축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수명주기 및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글로벌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5배 이상 (2020년 기준) 기여하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 중점 목표는 2050년 이후의 "탄소 중립에 기여"라는 브리지스톤의 장기 환경 비전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첫 번째 단계로, 브리지스톤은 공급자들에게 2026년 말까지 과학적 목표 설정(SBTs)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브리지스톤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수명주기 전체에 걸쳐 에너지 효율 최대화, 에너지 사용 감소, 재생 가능 에너지 포함 및 온실가스 배출 제한 등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최소 요건

- 공급자 에너지 사용 및 배출에 관한 모든 국가, 지역 및 지방 법규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공급자는 에너지 사용 감소 및 배출 최소화하거나 경감할 방법을 확인하고 그들이 공급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원산지점을 숙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공급자는 "과학적 기준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 중립을 향한 배출 감축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정보를 2026 년까지 브리지스톤과 **공유해야 한다.** 여기에는 브리지스톤에 대한 연간 진전 상황 및 이산화탄소 및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선 관행

- 공급자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 공급자는 에너지 감소 계획을 수립하고 브리지스톤과 공유한다.
- 공급자는 "과학에 기반한 목표"를 수립하고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배출 감축 계획을 세워 브리지스톤에 알린다. 여기에는 연간 진행상황과 이산화탄소 및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브리지스톤에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 공급자는 운영에서 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늘린다.
- 공급자는 온실가스를 감소 또는 제거하거나 탄소 중립 생산 및/또는 재료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을 모색하고 이행한다.
- 공급자는 운영 센터에서, 해당되는 경우, 제품 납품 시, 온실효과가 적은, 또는 플루오르카본이 없는 물질로 전환한다.
- 공급자의 운영은 ISO14001 과 같은 지속가능한 운영의 국제 공인 기준을 충족함을 인증 받는다.
- 공급자의 운영은 ISO50001 과 같은 에너지 사용의 국제 공인 기준을 충족함을 인증 받는다.
- 공급자는 SDG 7 – "저렴한 청정 에너지"와 같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의 기여를 증명한다.

- 공급자는 자사 공급자의 온실가스 감축을 격려하여 탄소 중립 공급망을 촉진한다.

4.1.7 화학물질의 관리 – 브리지스톤은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모든 국가, 지역 및 지방 법규의 준수를 약속한다.

최소 요건

- 공급자는 화학물질의 관리, 이용 및 보고 등에 관한 모든 국가, 지역 및 지방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필요에 따라, 공급자는, 국제자동차신고물질리스트(GADSL)에 표시된 요건과 같은, 브리지스톤 고객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공급자는 국가, 지역 및 지방 법규상 금지되는 화학물질 또는 브리지스톤 고객 요건상 금지되는 화학물질의 염려가 없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우선 관행

- 공급자는 화학물질 배출을 줄인다.
- 공급자는 부록 II 의 규범과 같은 국제 규범을 존중하고 모범 규준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 **권고된다**.
- 공급자는 사업 파트너에게 화학물질의 관리 체계를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지원한다.
- 공급자는 화학물질의 관리, 이용 및 보고에 대해 공급망을 교육시킬 정보를 공유한다.

4.2 인권 존중 – 브리지스톤은 인권 및 노동 문제의 해결이 지속가능성과 인적/자연 자본의 장기적 안정성,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브리지스톤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재료와 서비스를 조달하며, 이중 일부는 정부, 법규, 문화, 전통, 교육, 사고방식 및 소득 수준이 다른 전세계 지역에서 나온다.

브리지스톤은 유엔 세계인권선언(UDHR), 기업활동과 인권에 관한 유엔 지도 원칙, 국제노동기구(ILO)의 다양한 협약, 부록 II 에 수록된 기타 규범에 일반적으로 반영된 근본 원칙과 같은 인권에 대한 국제 규범을 존중한다. 브리지스톤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보유 권리에 관한 책임있는 통치의 임의 지침"(VGGT)에 동의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급자에 대한 기대: 인권 존중 증명

최소 요건

- 공급자는 공급자 국가 및 영업 지역에서 인권에 관한 모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공급자는 제품 및 서비스의 추적성을 개선하고 인권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그들이 공급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원천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공급자는 책임 광물 이니셔티브 동맹(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Alliance)에서 정리한 분쟁광물 보고 양식(CMRT) 및 코발트 보고 양식(CRT)을 활용하여 전체 공급망에서 분쟁광물(주석, 텅스텐, 탄탈럼, 금)과 코발트의 위험을 평가하고 매년 브리지스톤 그룹에 **보고해야 한다**. 더 나아가 공급자는 구매하는 광물의 제련소가 관련 책임 있는 광물 보증 프로그램(RMAP)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구매(소싱) 대안이나 광물 대체품을 찾기 위한 활동을 파악하고 전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우선 관행

- 공급자는 인권 및 기타 사회적 문제에 관한 교육을 개발하고 직원의 관련 지식 수준을 높인다.
- 공급자는 인권, 근로 조건, 기타 관련 문제에 관한 국제 표준 및 모범 규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 공급자는 상류부문 공급망이 인권, 근로 조건, 기타 관련 문제에 관한 국제 표준 및 모범 규준을 숙지 및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한다.
- 공급자는 자체 공급망 및 상류부문 공급망이 인권, 근로 조건, 기타 관련 문제에 관한 국제 표준 및 모범 규준을 준수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브리지스톤은, 공급망 내에서, 적절할 때마다, 국제 공인 기준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조달 운영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주요 영향과 이를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하여 브리지스톤은 다음 5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둔다.

1. **아동 노동**
2. **강제 노동**
3. **토지권**
4. **노동 및 근로 조건**
5. **공평한 대우**

4.2.1 아동 노동 – 브리지스톤의 기업 약속에 따라, 아동 노동은 **금지된다**.

최소 요건

- 아동 노동은 **금지된다**.
-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가정의 일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소근로자가 살고 있을 수 있는 가족농가 또는 운영에 공급자가 의존하는 경우, 공급자는 연소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이 그들의 건강이나 발육에 또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해로울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요청이 있을 경우, 브리지스톤에 **증명해야 한다**.
- 공급자는, 예를 들어, 교육을 받을 적당한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 및 연소근로자의 교육을 지원한다.

4.2.2 강제 노동 – 브리지스톤의 기업 약속에 따라, 강제 노동은 **금지된다**.

최소 요건

- 강제 노동은 **금지된다**.

우선 관행

- 공급자는 모든 직원이 자발적으로 고용되게 하고 해당 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 서명한 계약서와 같은 증거를 보유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 공급자는 모든 직원의 고용 상태, 임률 및 급여 명세를 기록해둔다.
- 공급자는 직원에게 고용을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관행이 운용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4.2.3 토지권 – 토지권 및 토지 이용 문제는 복잡하며 국가 및 지역마다 다르다. 브리지스톤은 영업을 하는 각 지역에서 토지 권리 및 사용과 관련된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잠재적인 사회적 및 환경적 영향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브리지스톤은 불법적인 토지 취득을 직간접적으로 야기하거나 원주민의 권리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브리지스톤은 영업 지역을 개발하거나 확대할 때마다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PIC) 원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토지 횡령에 관여하거나 이에 관여한 자로부터 토지를 공급 받지 않을 것이다.

브리지스톤은 삼림 의존 주민 및 지역사회가 식량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삼림 자원 및 적합한 농토를 이용할 권리를 포함하여 관례적, 전통적 및 집단적인 토지 보유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또한, 브리지스톤은 주민들이 그들의 권리 및/또는 생계를 침해하거나 이전에 침해했던 토지 이용 활동에 대해 상호 합의한 대책을 통해 공정한 보상 및 정착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천연 고무 공급망에서의 이행은 지역사회와 브리지스톤 그룹 및/또는 상호 합의한 당사자가 공동으로 감시한다.

최소 요건

- 공급자는 UNDRIP 에 따른 합법적인 수단에 따라서만 토지를 취득하거나 **이용해야 한다**.
- 공급자는 토지 횡령에 관여하거나 이에 관여한 자로부터 토지를 공급 받는 것이 **금지된다**.
- 공급자는 원주민 및 지역 사회의 관례적, 전통적 및 집단적 권리를 포함하여 합법적인 토지 보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공급자는 합법적으로 취득했더라도 국제 공인 표준에 따라 FPIC 원칙을 **따라야 한다**. GPSNR 에서 인정하는 방법론에 근거하여 천연 고무 공급망에서 인정되는 방법에는 UN-REDD(2012), RSPO(2015), FAO(2015)가 포함되며, 이는 본 방침의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급자는 어떠한 개발 계획을 위한 토지 횡령에도 관여해서는 안 된다.

우선 관행

- 개발 계획에 토지가 필요할 경우 공급자는 FAO 의 "보유 권리에 관한 책임있는 통치의 임의 지침"(VGGT)을 따른다.

4.2.4 노동 및 근로 조건 – 브리지스톤이 영업을 하는 각 지역은 최소 임금, 단체 교섭, 결사의 자유 및 근로 조건 기준을 포함하여 별개의 노동 법규를 갖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브리지스톤은 본 방침에 포함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각 지역의 법규 및 고유 특성을 이해하고 각 상황을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브리지스톤의 공급망에 관련된 모든 개인들이 ILO 기준, 유엔 원칙 및 기타 관련 관행에 따라 "모범 규준"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근로 조건을 적용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브리지스톤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익하도록 노동 및 근로 조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급자 및 기타 사업 파트너와 기꺼이 협력한다. 천연 고무 공급망 내에서 이러한 지원은 GPSNR 이행 가이드를 통해 정의된다.

최소 요건

- 공급자는 근로 조건 및 근로 시간에 관한 국가, 지역 및 지방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공급자는 해당 국가, 지역, 지방 법규에 따라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을 존중해야 하며, 현지의 법률에 유사한 보호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예: ILO 협약 제 87 호)에 반영된 근본적인 국제 원칙에 따라 이를 **존중해야 한다**.
- 공급자는 국가 또는 사회적 출신, 종교, 언어, 국적, 성별, 문화, 이주민 또는 기타 신분에 대한 차별 없이 그리고 법적인 요건을 넘어서 적어도 국가, 지역 또는 지방의 최소 임금을 직원들에게 지불해야 하며, 직원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시장 경쟁력 있는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공급자는 모든 직원들이 음용수, 위생 시설, 휴식 공간, 비상구, 긴급 지원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공급자는 음용수 이용, 음식 이용, 위생 시설 및 전기 시설을 포함하여 적정한 생활 조건을 지역 사회에 **지원해야 한다**.
- 공급자는 교육 및 고용 기회의 지원을 포함하여 지역 주민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를 **지지해야 한다**.

우선 관행

- 공급자는 직원에게 공정한, 시장 경쟁적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한다.
- 공급자는 노사간에 해당 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서면 계약을 작성한다.
- 공급자는 비차별적 방식의 고용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
- 공급자는 비차별 관행에 관해 노사를 교육하기 위한 훈련, 워크숍 또는 기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공급자의 운영은 SA8000, 관련 ILO 협약, ILO 양질의 일자리 지표, 공정 무역 국제 표준 등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 조건의 국제 공인 기준을 충족함을 인증 받는다.

4.2.5 공평한 대우 – 브리지스톤에 있어서, 타인을 존중하는 것은 남용, 괴롭힘 및 프라이버시 위반을 삼가는 것을 의미한다. 브리지스톤은 공급자와 비차별적이고 공정하며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공급자도 계약직, 임시직 및 파견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과 사업 파트너를 동일한 방식으로 대할 것으로 기대한다.

브리지스톤은 비차별 관행 및 관련 주제에 관한 보조 자료 또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공급자와 협력할 용의가 있다.

최소 요건

- 공급자는 항상 그들의 직원을 **존중해야 한다**.
- 공급자는 운영에 있어서 남용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공급자는 사업 운영 및 사업 관계에서 비차별, 공정 및 평등을 **실천해야 한다**.
- 공급자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할 뿐 아니라, 성별, 인종, 민족에 토대한 평등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전통적으로 대표성이 불충분한 집단의 고용 기회를 확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급자는 비즈니스 활동 보호를 위한 사설 및 공공 보안력을 공급자의 지시나 힘으로 통제하지 못하여 보안력이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해당 보안력을 고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인권 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지 않고 다음을 포함한다:
  - 고문 및 잔혹행위, 비인간적 행위 또는 존엄성에 반하는 대우
  -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 조직의 권리 및 결속의 자유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

우선 관행

- 공급자는 비차별에 관해 노사를 교육하기 위해 훈련, 워크숍 또는 기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공급자는 괴롭힘 사례의 발생 시 직원들이 보복, 위협 또는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보고할 수 있게 한다.
- 공급자는 ILO 협약 제 111 호 – 비차별(고용 및 직업), 공정노동위원회(Fair Labor Association) 원칙, 공정 무역 국제 표준, 기타 관련 국제 표준 또는 원칙과 같은 비차별 및 평등한 대우에 관한 국제 표준 및 원칙을 준수한다.

4.3 보건 및 안전(H&S), 재난 예방

브리지스톤은 보건 및 안전(H&S) 관리 및 재난 예방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지속가능한 안정된 이익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급자에 대한 기대: H&S 및 재난 예방에 대한 약속 증명

최소 요건

- 공급자는 보건 및 안전(H&S), 재난 예방에 관한 국가, 지역 및 지방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공급자는 이 문제에 관한 방침 및 계획/절차를 수립하고 그와 같은 시스템 및 계획을 이행할 충분한 자원을 **갖추어야 한다**.
- 공급자는 보건 및 안전(H&S), 재난 예방 방침 및 계획/절차를 모든 직원에게 알리고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에 관해 모든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공급자는 보호 안경, 안면 보호구, 환기 장치, 안전모, 보호 장갑, 작업용 부츠 등과 같이 필요한 개인 안전 장비(PPE)를 사용 설명서와 함께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우선 관행

- 사업 운영의 규모 및 범위에 비례하여, 공급자는 H&S 및 재난 예방을 처리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갖춘다.
- 공급자는 직원의 안전 및 보안을 고려하여 비상/사고 복구 계획을 수립한다.
- 공급자 운영은 모범 보건 및 안전 관리 관행의 국제 공인을 충족함을 인증 받는다.

브리지스톤이 영업을 하는 일부 국가들의 경우, 보건 및 안전 법규와, "건강한" 또는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재난 예방 규정 또는 관행도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브리지스톤은 사업 운영의 규모 및 범위에 비례하여 다음 4 가지 사항이 보건 및 안전, 재난 예방 관리 시스템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예방 활동**

2. **사고의 조기 탐지**
3. **비상 대응 활동**
4. **재발 예방 활동**

4.3.1 예방 활동 – 브리지스톤은 직원 및 직장을 보호하기 위해 선행적인 보건, 안전 및 재난 예방 활동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브리지스톤의 안전 강령에 기초하여, 브리지스톤은 4 가지 영역에 예방 활동을 적용한다(하우스키핑, 위험 인식, 위험 분석(RA), 안전 규칙).

4.3.1.1 하우스키핑 – 하우스키핑 프로그램은 작업에 필요한 사항과 불필요한 사항을 구분해주며, 불필요한 사항을 제거한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항목이 필요한가, 어느 장소에 필요한가, 얼마 정도가 필요한가를 명확히 하고 유지하도록 팀들을 안내한다. 프로그램이 항목 및 직장을 청결하고 정돈되도록 유지시켜 줄 것이다.

최소 요건

- 공급자는 H&S 방침 및 계획/절차의 일환으로 하우스키핑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

우선 관행

- 공급자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우스키핑 프로그램에 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4.3.1.2 위험 인식 – 위험 인식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직장에서 위험을 미리 탐지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최소 요건

- 공급자는 H&S 방침 및 계획/절차의 일환으로 위험 인식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우선 관행

- 공급자는 직원을 대상으로 위험 인식 프로그램에 관해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을 참여시킨다.

4.3.1.3 위험 평가 – 위험 평가(RA)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직장에서 잠재적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이들 위험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여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

최소 요건

- 공급자는 RA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
- 공급자는 식별한 위험을 완화시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에는 화재 경보 장치, 소화기, 실내 소화전, 방화 셔터 및 기타 필수 장비의 설치가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공급자는 사고 발생 시 이들 안전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공급자는 직장 및 기계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공급자는 비상시에 대피로 및 비상구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명확히 표시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우선 관행

- 공급자는 안전 점검 및 정비 발생 시 이를 기록해둔다.
- 공급자는 이중안전장치, 오작동방지장치, 연동장치/장비와 같은 안전 장치를 설치한다.
- 공급자는 카메라, 레이더, 센서, 레이저와 같은 장비로 위험 구역을 감시한다.

4.3.1.4 안전 규칙 – 각 직장에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 규칙을 준수하도록 모든 직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규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에너지 차단 표준 및 프로토콜(예: Lock Out, Tag Out, "LOTO")
- 기계 보호 및 방호벽 표준
- 추락 방지 표준
- 유해화학물질의 식별 및 표시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저장, 처리 및, 해당되는 경우, 재활용 안전 조치.
- 유해/금지 표시 구역 기준

최소 요건

- 공급자는 H&S 관리 시스템의 일환으로 직장 내 위험의 식별, 방지 및 대응에 관한 규칙을 **수립해야 한다**.
- 공급자는 이들 규칙을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우선 관행

- 공급자는 자체 LOTO(안전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국제 규범 및 공인된 모범 규준을 존중한다.
- 공급자는 위험/유해 또는 출입금지 구역을 명확히 표시한다.
- 공급자는 유해화학물질을 식별하여 표시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저장, 처리 및, 해당되는 경우, 재활용 안전 조치를 실시한다.
- 공급자는 안전 장치 및 방호벽을 설치한다.

4.3.2 사고의 조기 탐지 – 브리지스톤의 재난 관리 핵심은 예방 활동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나, 브리지스톤은 또한 영향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 화재 및 기타 사고를 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소 요건

- 공급자는 화재 경보 장치 및 기타 필수 탐지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4.3.3 비상 대응 활동 – 브리지스톤은 사고 발생 시 직원 및 직장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들이 사전에 취해야 할 필수 조치/단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브리지스톤은 공급망의 역할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될 상황을 적시에 알리며, 공급자도 그와 같이 행동하기를 기대한다.

최소 요건

- 공급자는 각 업무 현장에서 모든 직원들이 비상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사전에 대피로를 숙지하게 하고 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공급자는 응급처치 장비와 같은 대피용 필수 보급품을 사전에 준비하고 대피 절차 실시 중에 **제공해야 한다**.
- 공급자는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 상황의 발생 시 최대한 신속히 브리지스톤에 **보고해야 한다**.

우선 관행

- 공급자는 비상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학습 내용을 과정 및 절차에 반영할 것이 **권고된다**.

4.3.4 재발 예방 활동 – 브리지스톤은 H&S 사고 또는 재난의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의 사고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브리지스톤은 기존의 조치, 새로운 경험 및 조정된 조치를, 적절한 것으로 판단 시, 공급자와 공유할 수 있다.

최소 요건

- 공급자는 재발 방지 계획("얻은 교훈")을 H&S 및 재난 예방 방침 및 계획/절차에 **반영해야 한다**.

우선 관행

- 공급자는 새로운 학습 내용 및 비필수적인 사항을 기존 H&S 및 재난 예방 계획/절차에 반영할 것이 **권고된다**.

4.4 탄력성

4.4.1 탄력성 – 브리지스톤은 위험 감소 및 완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이 제어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다. 자연 재해, 기후 변화의 영향, 병발생, 정치적 격변 등과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은 생산 지역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와 같은 영향은 공급망, 환경, 지역 사회에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브리지스톤은 난관에 처하게 될 때 신속히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달 운영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와 공급망의 탄력성 및 민첩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브리지스톤은 탄력성을 "변화 극복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브리지스톤은 민첩성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최소 요건

- 공급자는 재난 예방 및 위험 완화에 관한 국가, 지역 및 지방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우선 관행

- 공급자는 재난 예방 및 위험 완화 계획을 통해 운영상 탄력성과 민첩성을 확보한다.
- 공급자는 공급 및 수요의 혼란과 같은 소비자 또는 고객 요구에 관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부록 I –
용어 정의

부록 I – 용어 정의

남용이란 어떤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가하는 신체적, 성적, 언어적 또는 심리적 형태의 위해를 말한다. "권한의 남용"이란 다른 사람에 대해 영향력, 권력 또는 권한의 지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뇌물 수수란, 유엔 반부패 시행방안(Anti-부패 Toolkit)에 따르면, 행동이나 결정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뇌물 수수는 뇌물을 바라거나 요구하는 자나 뇌물을 제안 및 제공하는 자에 의해 시작될 수 있다. 뇌물 수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부패로 추정된다.

탄소 중립(또는, 이산화탄소 배출 근절)은 특정한 기간 동안 인위적인 이산화탄소 제거를 통해 전세계의 인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균형을 이룰 때 달성된다.

아동 노동이란 아동이 살고 있는 국가 및 지역의 최저 법정 노동 연령에 속하는 사람의 고용을 말한다.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아동 노동 연령은, ILO 협약 제 138 호에 따르면, 수월한 작업의 경우 15 세 미만, 위험 또는 유해 작업의 경우 18 세 미만으로 간주된다. 일부 개발도상국의 경우, ILO 또는 전술한 국가, 지역 및 지방 법규가 허용하는 조건의 경우를 제외하고, 14 세가 최저 근로 연령이다.

OECD 의 정의에 따른 **분쟁광물**은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지원, 인권 위반 및 사회 경제적 발전 저해 등의 무력 충돌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한다.

삼림벌채란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1 차 삼림 또는 보존 가치가 높고(HCV) 탄소 보존량이 높은(HCS) 지역에서 행해지는 개간을 말한다.

차별이란 개인적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행동이나 인종, 민족, 국적, 성별, 연령, 언어, 종교, 신념, 이념, 사회적 신분, 장애 또는 기타 보호받는 특성에 근거한 차별을 말한다.

환경 관리 시스템이란 모범 환경 관리를 촉진하는 일련의 과정 및 절차를 말하며, 이는 조직 내에서 실행될 수 있다.

환경적으로 책임지는 조달은 환경적 영향이 적은 재료 및 부품의 선택과, 환경을 고려하는 방식의 제품 생산 및 서비스를 장려한다.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PIC)는 삼림벌채 및 삼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REDD)에 관한 유엔 협력 계획에 의해 개발되었다. FPIC 는 이해관계자들의 협의, 동의 및 삼림 의존 지역사회

참여가 인권과 원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칙에 근거한다. "자유(free)", "사전(prior)", "인지(informed)"라는 말은 UN-REDD 프로그램의 FPIC 정의에 따라 정의된다.

강제 노동은, ILO 협약 제 29 호에 따르면, 당사자가 자청하지 않고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된 모든 작업 또는 용역으로 정의된다.

브리지스톤은 강제 노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
- 부채 미상환으로 인해 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채로 인한 노동
- 인신매매로 초래된 노동
- 가혹한 환경에서의 비인간적인 교도소 노동
- 합리적인 통지에 따른 자발적 이직의 금지
- 직원의 신분증/여권/취업허가증을 보관하기로 한 고용주 요건*
-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고용주 보유 및 관리 계좌에 급여 입금
- 직원이 구내를 떠날 수 없는 여건

**이 고용주 요건은 법률로 특별히 요구되거나 직원이 고용주가 신분 서류를 보관하도록 원하는 경우 강제 노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 경우에 직원은 해당 신분 서류에 자유로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직원이 외국 여행 의사를 밝히는 경우와 고용 관계 종료 즉시 돌려 받아야 한다.*

삼림은, FAO 에 따르면, 토지 면적이 0.5 헥타르 이상, 나무의 높이가 5m 이상, 입목의 수관밀도가 10% 이상, 나무가 원위치에서 이들 임계치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로 정의된다. 농토 이용 또는 도심 토지 이용이 두드러진 토지는 삼림에 포함되지 않는다.

온실가스란 대기 중 열을 가두어 세계 기후 변화를 야기하는 기체를 말한다. UNFCCC(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의 정의:

- 이산화탄소 (CO2)
- 메탄 (CH4)
- 아산화질소 (N2O)
- 수소불화탄소 (HFCs)
- 과불화탄소 (PFCs)
- 육플루오르화항 (SF6)
- 삼플루오르화질소 (NF3)

괴롭힘이란 피해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원치 않는, 반갑지 않은, 마음을 끌지 못하는 행동을 말한다. 피해자에게 적대적인 환경을 야기한다.

탄소 보존량이 높은(HCS) 지역이란 대체 토지 이용에 비해 탄소 격리 저장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지역을 말한다. HCS 접근법 운영 그룹(Approach Steering Group)은 HCS 접근법을 "보호삼림지역을 개발될 수 있는 탄소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낮은 척박한 토지와 구별하는 방법"으로 정의한다.

높은 보존 가치(HCV)란, HCV 자원 네트워크에 따르면, 세계적, 국가적, 지역적 또는 지방적 수준에서 두드러지게 의미가 있거나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생물학적, 생태학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가치를 말한다. 브리지스톤은 HCV 지역을 HCV 자원 네트워크가 정의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한다.

원주민이란, 유엔의 정의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말한다.

-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용인되는, 개별적 수준의 원주민으로서 자기동일시.
- 식민지 이전 및 정착민 이전 사회와의 역사적인 연속성
- 영토 및 주변 천연 자원에 대한 강력한 유대
- 뚜렷한 사회적, 경제적 또는 정치적 체계
- 뚜렷한 언어, 문화 및 신념
- 사회의 비지배적인 집단
- 독특한 민족 및 지역사회로서 조상 대대로의 환경과 체계를 유지 및 재생산하려는 결심

토지 횡령은, 국제토지연합의 티라나 선언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취득 또는 양여로 정의된다.
(i) 특히 여성의 평등권과 인권을 침해함, (ii) 영향을 받은 토지 이용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에 기초하지 않음, (iii) 철저한 평가에 기초하지 않거나 발생된 방식을 포함하여 사회적, 경제적 및 환경적 영향을 무시함, (iv) 활동, 고용 및 성과 공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명시하는 투명한 계약에 기초하지 않음, (v) 효과적인 민주적 계획, 독립적 감시 및 의미있는 참여에 기초하지 않음.

수명주기란 모든 제품이 도입에서 쇠퇴, 적절한 사용의 종료 또는 최종 종말에 이르기까지 거치는 주기를 말한다. 이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제조 및 비생산 지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전체 가치 사슬에 해당된다.

지역 사회란 특정한 지역에 함께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최소 요건이란 브리지스톤이 공급자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브리지스톤은 이들 최소 요건이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사업 파트너 관계 및 성공에 기여하는, 보다 강력하고 보다 건전한 지역사회를 창출하는 데 근본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탄지대란 물이 포화된 환경에서 퇴적된, 부분적으로 분해된 상태의 식물 재료로 이루어진 늪지대를 말한다.

원산지점이란 재료 또는 천연 자원이 발견되거나 생산되는 본래 장소를 말한다. 추적성 측면에서, 공급자는 공급망을 통해 자원이 발견되거나 생산된 본래 장소로 자원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관행이란 브리지스톤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는 관행을 말한다. 브리지스톤은 사업, 지역 및 국가의 다양한 조건으로 인해 모든 공급자가 즉시 이러한 수준 높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한다.

프라이버시란 해당 정보와 관련된 개인 또는 기업이 허가를 얻지 않는 한 제 3 자와 공유되어서는 안 되는 기밀 또는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존중이란 어떤 사람의 가치나 우수성, 개인적 자질이나 능력, 또는 개인적 자질이나 능력의 표명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해 존경이나 느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또한 권리, 특권, 특권적 지위 또는 특정한 권리나 특권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어떤 것에 대한 존경이기도 하다.

과학에 기반한 목표(SBT)란 세계 기온 상승을 1.5℃ 로 제한하거나 산업화 이전 온도보다 2°C 를 더 낮추는 기온 저감 조치에 맞춘 목표를 말한다. 그러나 글로벌 지속 가능한 조달 정책에서 SBT 는 다음의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과학에 기반한 목표와 동등한 스코프 1 및 2 감축 목표를 의미한다.

(1)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범위: 공급자는 최소한 스코프 1 및 스코프 2 배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2) 목표 연도: 목표 연도는 목표 설정 후 5 에서 10 년 이내여야 한다. (공급자는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기준 연도를 설정할 수 있지만, 가까운 연도가 권장된다.)
(3) 감축 목표: 감축 목표는 절대적인 스코프 1 및 2 배출의 4.2%/1 년(=1.5°C 수준) 이상의 감축에 해당해야 한다. (누적 감축 계획도 허용된다.)

공급자는 2026 년까지 SBT 와 동등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이를 SBT 이니셔티브(SBTi)에 검증받을 것을 권장한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브리지스톤은 SBT 이니셔티브에서 승인한 목표 설정 방법을 수용한다. 이미 SBT 인증을 받았다면 최신 기준에 따라 인증이나 목표 설정을 유지해야 한다.

소규모농가란 소규모의, 대체로 가족이 경영하는 농장을 말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소규모농가란 1 헥타르 미만~10 헥타르의 다양한 지역을 관리하는 소규모 농부, 목축민, 삼림지기, 어부를 말한다. 소규모농가는 생산에 주로 가족 노동을 이용하고 생산품의 일부를 가족이 소비하는 농가 시스템의 안정성 선호와 같은 가족 중심의 동기가 특징이다.

이해관계자란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브리지스톤의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는 소비자, 고객, 국제 및 지역 사회, 원주민, 산업 협회, 주주, 직원, NGO, 기타 조직, 국가, 지역 및 지방 정부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본 방침에서 **공급자**란 브리지스톤에 천연 고무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직접적인 사업 파트너로 정의되며, 브리지스톤의 내부 제조시설과 운영시설도 포함한다.

지속가능한 천연 고무란 글로벌 지속가능 조달 방침의 모든 구성요소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생산되는 것을 말한다.

지속가능한 조달 관행은 주요 사업 파트너 및 공급자의 환경적 관심, 인권, 책임지는 노동 관행 및 건전한 거버넌스를 존중하는 운영에 기대를 건다.

추적성이란 원료 및 제품의 원천, 생산 과정, 관련된 사람, 원료 또는 제품의 원천 공급이 공급망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파악하고 확인하는 능력을 말한다.

투명성이란 모든 조달 및 보다 폭넓은 사업 운영을 위한 명확한 의사소통, 정확하고 정직한 사업 거래, 포함, 공정한 관계, 성실 증명에 대한 긍지를 말한다.

물부족 지역이란 물 부족 및 결핍에 처한 지역을 말한다. 기후 변화가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침에 따라 특정 지역은 물 가용성과 관련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연소근로자란, 사회적 책임 국제기구(SAI)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아동 노동에서 정의된 아동의 연령을 초과한 연령에서 18 세 미만의 근로자를 말한다.

부록 II –
참고 문헌

부록 II – 참고 문헌

본 방침의 작성 시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다.

- 브리지스톤 기업 글로벌 방침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대한 협약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 산림자원평가(FRA) 조사보고서 2015"*
- FAO 의 "보유 권리에 관한 책임있는 통치의 임의 지침"(VGGT)
- 국제자동차신고물질리스트(GADSL)
- 탄소 보존량이 높은 접근법 운영 그룹
- 높은 보존 가치(HCV) 자원 네트워크
- 시민권 및 정치권에 관한 국제 규약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연구소 (IISD)
- 국제노동기구 협약:
  - 138 – "최저 연령 협약"은 15 세, 일부 개발도상국의 경우 14 세 미만은 매우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근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146 – "최저 연령 권고"는 최저 연령을 16 세로 권고하며, 유해 고용 작업 및 고용 조건을 다룬다.
  - 182 –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 협약"은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을 기술한다.
  - 29 – "강제 노동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적 노동의 이용 금지 약속을 기술한다.
  - 105 – "강제 노동 폐지 협약"은 강제 노동의 이용 금지에 대한 약속을 기술한다.
  - 110 – "플랜테이션 협약"은 계절 근로자를 포함하여 플랜테이션 근로자의 고용 조건을 기술한다.
  - 111 – "차별(고용 및 직업)"은 고용 및 직업 분야 내의 차별을 다루고 "차별"이라는 용어를 정의한다.
  - 100 – "공평한 보수 협약"은 남성과 여성에게 똑같아야 하는 기본 또는 최저 임금을 인정한다.
  - 87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호를 다룬다.
  - 98 -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은 노조금지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다룬다.

  - 169 – "원주민 협약"이란 원주민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다루는 비준을 위한 국제 조약을 말한다.
- ISO14001 – 환경 관리 시스템 표준
- ISO20400 – 지속가능한 조달 지침
- ISO 26000 – 사회적 책임에 관한 지침
- ISO 9001 – 품질 관리 시스템 표준
-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 2015 (UK)
- 산업안전보건청 (OSHA)
- 분쟁지역 및 고위험 지역 광물의 책임 있는 공급망을 위한 OECD 실사 지침
- 정책 체계 – 지속가능한 천연 고무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
-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을 위한 협의회(2015) - 지역주민 사전 동의(FPIC)
- 사회적 책임 국제기구 (SAI)
- 과학에 기반한 목표
- 티라나 선언 – "천연 자원 경쟁 강화 시 빈민의 토지 접근 확보"
- 도쿄 2020 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지속가능한 원천 코드의 기본 원칙
- 삼림벌채 및 삼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유엔 협력 계획 (REDD+)
- 원주민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
- 유엔 환경 프로그램
-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지도 원칙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괴롭힘, 성희롱, 권한의 남용에 관한 정책
- 유엔 뉴욕삼림보호선언
-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 유엔 세계인권선언
- 유엔 지도 원칙 31(globalnaps.org)
- 지역주민 사전 동의(FPIC)에 관한 유엔 REDD 프로그램 지침